

##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2
----------	------

제출연월일 : 2003. 6.

제출자 : 동두천시장

###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 및 2003. 5.13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화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각각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같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b></p> <p>②국가유공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급 내지 7 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 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p> <p>1 ~ 4 (생략) ③(생략)</p>	<p><b>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b></p> <p>②국가유공자등에우밋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급 내지 7 급 및 광주민주유공자에 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 급 내지 14 등급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회운동부상자) —</p> <p>----- ----- ----- ----- -----</p> <p>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